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구상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장 (gskang@kiep.go.kr, 044-414-1099)

김혁중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hjkim@kiep.go.kr, 044-414-1166)

박은빈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ebpark@kiep.go.kr, 044-414-1046)

차 례

1. 배경
2. 상호관세 주요 내용
3. 시사점

주요 내용

-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 있었던 관세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함(2025. 4. 2.).
 -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566억 달러 규모의 수입액(24년 기준)에 적용됨.
 - 10%의 기본 관세율에 더해 미국의 수입액 대비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57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로 중국(11→129%), EU(1→16%), 멕시코(0→19%), 베트남(4→45%), 대만(1→27%), 일본(2→25%), 한국(0→23%) 등 실효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2024년에 비해 크게 상승할 예정임.
 - 미국은 △기존 제232조 관세 품목(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USMCA를 통한 수입, △부속서 2에 명시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효 후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90일간 차등관세 부과 유예와 함께 75개국 이상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 ▶ 미국 내 업계는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혼재된 시각을, 학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으며, 의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임.
 - [업계] 미국 관세조치의 주된 보호 대상인 자동차와 철강 협·단체는 관세 인상을 지지하지만, 공급망 하류부문의 협·단체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함.
 - [학계]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음.
 - [의회]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에 대해 상원이 종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 4명도 이에 동조함.
- ▶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면서 관세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2022~23년 미국 내 주요 그린필드 투자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중간재 수출도 급증한 측면이 있어 2024년 단년도의 수출입 실적만으로 상호관세율이 책정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해 △대미 투자와 연계된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 △미국 내 현지 생산 전환을 통한 수출 감소 등을 강조하며 상호관세율 인하를 유도해볼 수 있음.
 - 이 외에도 △상호관세 품목 범위 조정, △대미 수입 확대(예: LNG 등)를 제시할 수 있으나, 단일 의제만으로 획기적인 상호관세율 인하를 이루어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국내 산업 정책 강화 및 해외 공조, △미국산 및 파생상품 함량 관리, △추가적인 제232조 관세(반도체 등) 부과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현지시각)에 미국의 교역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을 발표함.
-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1/20)과 함께 발표된 ‘미국우선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이하 AFTP)’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따라, 관련 연방부처 및 기관의 미국 상품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경제·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 조사 결과에 기반함.
 - 동 각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조사 후 미국 상품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경제 안보 및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추가 관세(global supplemental tariff)’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권고’하도록 지시
- 또한 동 행정명령은 지난 2월 13일(현지시각)에 발표된 ‘상호무역 및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 이하 RTT)’ 대통령 각서의 후속조치임.
 - 동 각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교역국의 비상호적인 무역관행은 물론 해당 관행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간 관계에 대한 조사를 지시
- AFTP 및 RTT 대통령 각서 조사 결과에 따른 이번 행정명령 발동의 근거로 △미국의 대규모 상품 무역수지 적자 지속, △주요 교역국과의 호혜성 부족, △관세율 격차 및 비관세장벽 등이 제시됨.
 -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대규모 상품 무역수지 적자 지속이 미국 내 제조 기반 공동화, 주요 공급망 훼손, 방위산업 분야의 적대국에 대한 의존을 초래했다고 지적
 - 또한 이러한 대규모 상품 무역수지 적자는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주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미국과 해당 교역국 간 관세율 차이 및 비관세장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 * 상호주의 부족의 예시로서 미국의 평균 MFN 관세율(3.3%)에 비해 인도(17%), 브라질(11.2%), 베트남(9.4%), 중국(7.5%), EU(5%) 등의 높은 평균 MFN 관세율이 언급
 - * 더불어 △내연기관차(미국: 2.5%, 인도: 70%, 중국: 15%, EU: 10%), △네트워크 스위치 및 라우터(미국: 0%, 인도: 10%), △에탄올(미국: 2.5%, 인도네시아: 30%, 브라질: 18%), △왕겨(미국: 2.7%, 인도: 80%, 말레이시아: 40%, 튀르키예: 31%) 등 품목별로 미국과 주요국 간 평균 MFN 관세율을 비교
 - * 비관세장벽의 예시로 2025년 「외국무역장벽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 수록된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으며, 미국(68%)에 비해 특정 국가들의 GDP 대비 낮은 소비 비율(독일: 50%, 한국: 49%, 중국: 39%, 싱가포르: 31%, 아일랜드: 27%)도 지적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효(미 동부 표준시 기준 4월 9일 오전 12시 1분)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90일간 ‘차등관세 부과 유예’와 함께 75개국 이상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을 발표함.
 - 트럼프는 강경한 보복관세 대응을 예고한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을 12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그 외 국가에 대한 차등관세 부과 조치는 90일 동안 유예하고 상호관세율 10%만 일괄 부과할 것이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힘.¹⁾

■ 기존 불법 펜타닐 및 이민 관세, 제232조 관세에 이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도입함.

- 한국의 경우 이번 상호관세는 대략 566억 달러 규모의 수입액(2024년 기준)에 적용되며, 이전 제232조 관세에 비해 부과되는 범위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관세 조치 현황

관세종류 (근거법)	국가 및 품목	주요 내용	한국에 대한 노출 범위														
불법 펜타닐 및 이민 관세 (IEEPA)	중국	· 중국에 대한 20% 관세(펜타닐)	· 해당 관세는 한국에 직접적으로 부과되지 않음.														
	멕시코 및 캐나다	·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되, USMCA 를 통한 수입품에는 면세															
제232조 관세 (무역확장법)	철강 알루미늄	· 기존 합의사항 폐기 후 일 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 하며, 파생상품을 비롯한 품 목 범위 대폭 확장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류*</th> <th colspan="2">대한민국 수입액('24년; 억 달러)</th> </tr> <tr> <th>철강</th> <th>알루미늄</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29</td> <td>9</td> </tr> <tr> <td>파생</td> <td>26</td> <td>58</td> </tr> </tbody> </table> <p>*제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품목에 한정</p>	분류*	대한민국 수입액('24년; 억 달러)		철강	알루미늄	일반	29	9	파생	26	58			
	분류*	대한민국 수입액('24년; 억 달러)															
		철강	알루미늄														
일반	29	9															
파생	26	58															
자동차 및 부품	·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 [USMCA] USMCA를 통한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산 함량 은 제외하고 관세 25% 부과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보류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류*</th> <th colspan="2">대한민국 수입액('24년; 억 달러)</th> </tr> </thead> <tbody> <tr> <td>자동차</td> <td colspan="2">374</td> </tr> <tr> <td>부품</td> <td colspan="2">136</td> </tr> </tbody> </table> <p>*제232조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 품목에 한정</p>	분류*	대한민국 수입액('24년; 억 달러)		자동차	374		부품	136							
분류*	대한민국 수입액('24년; 억 달러)																
	자동차	374															
부품	136																
향후 계획	· 반도체, 의약품, 목재, 구리에 대한 제232조 관세 조치를 예고한 바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류*</th> <th colspan="2">대한민국 수입액('24년; 억 달러)</th> </tr> </thead> <tbody> <tr> <td>반도체</td> <td colspan="2">25</td> </tr> <tr> <td>의약품</td> <td colspan="2">39</td> </tr> <tr> <td>목재</td> <td colspan="2">1</td> </tr> <tr> <td>구리</td> <td colspan="2">6</td> </tr> </tbody> </table> <p>*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 2를 통해 향후 제232조 관 세 부과 대상 품목 범위를 대략적으로 유추함. 공식 적으로 추가 제232조 관세 범위가 발표된 바는 없음 (2025. 4. 5. 기준)</p>	분류*	대한민국 수입액('24년; 억 달러)		반도체	25		의약품	39		목재	1		구리	6	
분류*	대한민국 수입액('24년; 억 달러)																
	반도체	25															
의약품	39																
목재	1																
구리	6																
상호관세 (IEEPA)		· [USMCA] USMCA를 통한 수입에는 별도의 관세 부과 없음. USMCA 외 품목에는 25% 관세 부과(불법 펜타닐 및 이민 관세 폐기 시 12% 관세 적용) ²⁾ · 기타 국가에는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분류*</th> <th colspan="2">대한민국 수입액('24년; 억 달러)</th> </tr> </thead> <tbody> <tr> <td>상호 관세 대상</td> <td colspan="2">566</td> </tr> </tbody> </table> <p>*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품목은 제외하고 계산했으 며, 자세한 품목 범위에 대해서는 [표 3]을 참고</p>	분류*	대한민국 수입액('24년; 억 달러)		상호 관세 대상	566									
분류*	대한민국 수입액('24년; 억 달러)																
	상호 관세 대상	566															

주: 참고로 미국의 2024년 기준 대한국 수입액은 1,315억 달러임.

자료: 각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 및 포고령을 참고했으며, 교역자료는 US Censu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4309144289505174>(검색일: 2025. 4. 10.).

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상호관세 배제 품목과 국가군에 관한 조치 일람)을 참고하기 바람.

2. 상호관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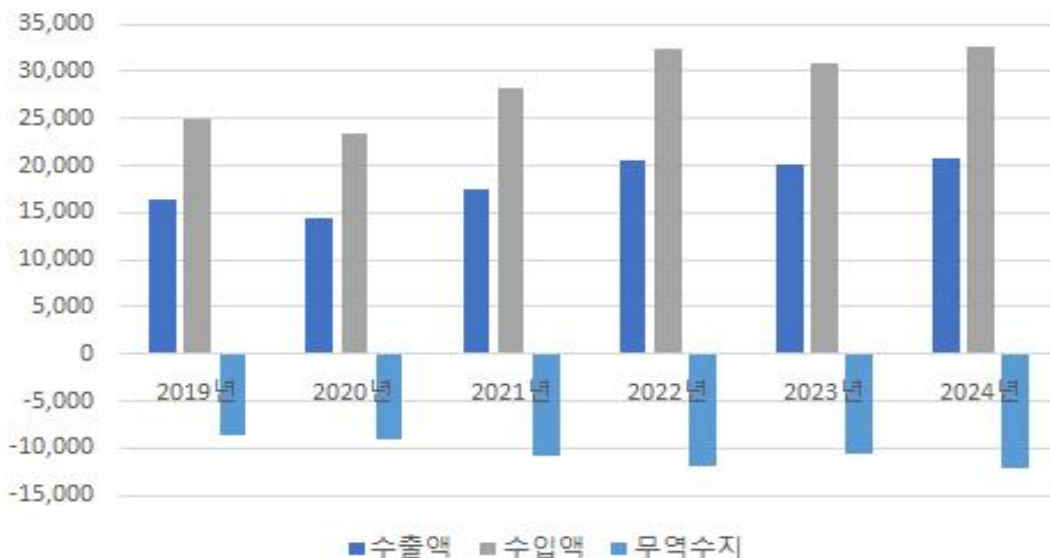
가. 상호관세 개요 및 국가별 관세율

■ 이번 행정명령은 상호관세로 명명되고 있으나 보편관세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

-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통상정책 공약에 포함된 내용임.
 - 보편관세의 경우 2024년 대선 레이스 초반 ‘10%의 일률적 관세 부과’를 공언하였으며, 대선 직전에는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 *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p 관세 부과는 트럼프의 보편관세 대선 공약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음.
 - 상호관세는 ‘트럼프상호무역법(TRTA: Trump Reciprocal Trade Act)’의 연방의회 통과를 추진함으로써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거나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에 해당함.
- 동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이하 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 이하 NEA)」임.
 - 새로운 입법을 통해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연방의회의 개입을 피해 대통령 직권으로 신속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IEEPA와 NEA를 활용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전 세계 대상 상품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5년간 40% 이상 증가하여 2024년 기준 1조 2,000억 달러(실제 1조 1,989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근거로 제시함.

그림 1. 미국의 대세계 상품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검색일: 2025. 4. 3.).

-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품 무역수지를 해당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로 일괄적으로 조치하되, 대미 무역수지 적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적인 추가 관세가 부과됨.
- 국가별 최종 상호관세를 결정에는 미국의 해당 국가 대상 상품 무역수지 비율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³⁾
 - 이번 행정명령 발표 전 트럼프 대통령은 국별 상호관세를 도출하는 데 부가가치세(VAT)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의 영향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 상호관세를 산출 과정에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중요한 고려 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USTR이 발표한 산식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되, 극소수 국가에는 예외를 적용함.
 - Column 2 관세를 적용받는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쿠바 등의 국가에는 상호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USTR 산식에 따르면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9%라는 점에서 50% 할인된 상호관세율이 25%가 되어야 하나,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아 10%의 관세만 적용받음.
 - 이 외 홍콩과 마카오는 USTR 산식에 관계없이 대중국 상호관세율(125%)과 동일하게 적용받음.

표 2. 미국의 주요 상품 무역수지 적자국 대상 상호관세율 현황

(단위: 억 달러, %)

국가	발표된 무역장벽	상호 관세율	환율조작 또는 관찰대상국	부가가치세 (VAT)	국별 무역수지	국별 수입액	국별 무역수지 비율(%)
중국	67%	125%	○	6~13%	-2,944	4,389	-67.1
EU	39%	20%	○(독일)	(평균)22%	-2,356	6,058	-38.9
베트남	90%	46%	○	8%	-1,235	1,366	-90.4
대만	64%	32%	○	5%	-739	1,163	-63.5
일본	46%	24%	○	10%	-685	1,482	-46.2
한국	50%	25%	○	10%	-660	1,315	-50.2
태국	72%	36%		7%	-456	633	-72.0
인도	52%	26%		18%	-457	874	-52.3
스위스	61%	31%		8.1%	-385	634	-60.7
말레이시아	47%	24%		10%*	-248	525	-47.2
인도네시아	64%	32%		11%	-179	281	-63.7

주: 1) 국별 무역수지 비율=(국별 무역수지/국별 수입액)*100, 2024년 기준.

2) 당초 발표된 중국 상호관세율은 34%였으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125%로 상향 조정

3) 부가가치세(VAT) 칼럼 중 * 표시된 말레이시아는 부가가치세 대신 판매세(Sales Tax)를 운영.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USA Trade Online, The White House(2025. 4. 2.),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04/Annex-1.pdf>(검색일: 2025. 4. 3.); The White House(2025. 4. 8), "AMENDMENT TO RECIPROCAL TARIFFS AND UPDATED DUTIES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amendment-to-reciprocal-tariffs-and-updated-duties-as-applied-to-low-value-imports-from-th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5. 4. 10.).

3) USTR(<https://ustr.gov/issue-areas/reciprocal-tariff-calculations>)에 따르면 각국의 상호관세율은 다음의 산식을 통해 계산됨.

$$\Delta\tau_i = \frac{x_i - m_i}{\varepsilon \cdot \varphi \cdot m_i}$$

이때, $\Delta\tau_i$ 는 미국 입장에서의 i 국 무역장벽, ε 는 미국의 수입탄력성(수입 가격 변화에 따른 미국의 수입액 변화), φ 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의 수입 가격 전가분(관세 변화에 따른 수입 가격 변화), x_i 는 미국의 대 i 국 수출액, m_i 는 미국의 i 국으로부터 수입액을 지칭함. 또한 ε 는 4로, φ 는 0.25로 가정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대 i 국 무역수지를 미국의 i 국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 무역장벽($\Delta\tau_i$)의 50%만큼을 i 국에 상호관세율로 부과함.

- 이번 행정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관세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행정명령 제4조)하고 있음.
- [상호관세 효과 평가] 상무장관과 USTR 대표는 다음의 경우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동 조치가 무역적자 증가, 비호혜적 무역관행 확대 등 국가비상사태 해결에 효과가 없거나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 [보복조치 대응]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교역 상대국이 보복관세 또는 기타 수단으로 대응할 경우, 미국 조화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이하 HTSUS) 수정을 통해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우호조치 대응]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비호혜적 무역관행을 해소하고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충분히 조율할 경우 HTSUS 수정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관세 적용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
- [미국 제조업 악화 대응] 상호관세 부과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제조 역량과 생산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HTSUS 수정을 통해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음.

나. 상호관세 미적용 품목과 국가군

- △제232조 관세 적용 대상 품목, △USMCA 적용 품목, △미국산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적용하지 않음(표 3 참고).

표 3. 상호관세 배제 품목과 국가군에 관한 조치 일람

제3조	개요	주요 내용 및 해석
(b)	(i) 50 U.S.C. 1702(b)	· IEEPA 권한 밖의 거래(통신, 기부, 정보, 여행에 따른 통상적인 수반품)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ii) 철강 및 알루미늄	· 기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관세(포고령 9704호, 9705호, 9980호, 10895호, 10896호) 대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iii)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포고령 10908호) 대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iv) 기타 부속서 2의 품목	·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특정 주요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동 행정명령의 부속서 2에 열거된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v) Column 2 적용대상국	· 미국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국가(쿠바,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vi) 향후 제232조 관세 부과 대상 품목	·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제232조 관세를 적용할 품목(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가능)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d) (e)	USMCA 특별 대우	미국의 대한민국 및 멕시코 상호관세

제3조	개요	주요 내용 및 해석				
		구분		기존 불법 펜타닐 및 이민 EO*		
			O	유지	폐지	
		USMCA 원산지	X	캐나다산 에너지, 에너지 자원, 칼륨(비료)	+0%	+0%
				멕시코산 칼륨(비료)	+10%	+0% (멕시코산 에너지도 포함)
			그 외 품목 중 동 행정명령에서 예외로 하지 않는 품목	+25%	+12%	
		주: 1) '기존 불법 펜타닐 및 이민 EO'에 따라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멕시코와 캐나 다산 수입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며, 이번 상호관세를 '기존 불법 펜타닐 및 이민 EO'에 더해 적용하지 않음. 2) USMCA 원산지 행에서 'O'는 원산지 기준 충족, 'X'는 원산지 기준 불충족을 의미함. 3) 본 표는 상호관세만 다루고 있으며, 기존 제232조 관세(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따라 캐 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결정됨에 유의해야 함.				
(f)	미국산 함량에 대한 배제	· 미국산 물품 가치*가 20% 이상인 경우 미국산이 아닌 부분에만 동 행정명령의 추가 관세를 적용함. * 미국산 물품 가치: 미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구 성 요소에 기인하는 물품의 가치				
(g)	해외무역지역 처리	· 해외무역지역*에 반입되는 품목(중 19 CFR 146.43에 따른 "국내 지위"로 반입되는 품목을 제외한 것)은 19 CFR 146.41에 따른 "특별대우 외국 지위"로 반입되어야 함.** * 해외무역지역: 자유무역지구와 비슷한 미국의 특별 지역을 의미함. **해외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뒤 관세가 매겨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관할 지역 내로 반입할 때 애초에 해당 물품이 반입되었을 때와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관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음.				
(h)	최소 면세 대우 유지	·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최소 면세 대우(De Minimis)에 해당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 적용을 유지함.				

자료: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USMCA] 미국은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수입액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했으며, 이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은 제한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對멕시코 및 對캐나다 수입에서 USMCA 양허 대상 품목의 비중은 대략 60%라는 점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상당 부분의 상호관세를 USMCA를 통해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USMCA로 인정되어 수입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USMCA 양허 대상 품목의 상당 부분이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 될 것으로 추정됨.
 - * 미국의 세관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24년 기준 USMCA 양허 대상 품목 전체 수입액 중 대략 80%가 무관 세로 수입된다는 점에서 USMCA 활용률을 대략 80%로 추정해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시행했던 제232조 관세 조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실효관세 율은 전체적으로 10%를 상회하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표 4. USMCA 적용 품목 배제 효과('24년 수입자료 기준)

		멕시코 실효관세율	캐나다 실효관세율
불법 펜타닐 및 이민 관세. 제232조 관세 시행	전	0%	0%
	후	19%	16%

주: 1) 실효관세율은 전체 품목의 관세 수입을 전체 품목에 대한 수입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2) 실효관세율 계산 과정에서 제232조 관세가 시행될 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은 모두 25%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했으나 이는 실효관세율을 과다 계상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는 파생상품(철강, 알루미늄) 및 미국산 제외 부분에 대한 함량과세(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로 인해 실제로는 더 낮은 실효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자료: US Census.

■ [일부 품목 배제 효과] 비록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서 일부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및 핵심광물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대체로 많은 국가의 실효관세율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2024년도 교역액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와 확대된 제232조 관세 조치(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등)로 인해 실효관세율이 23%로 상승할 수 있음.
 - 다만 미국산 함량 요건 등에 따라 수입액의 일부가 면세될 수 있는 만큼, 본고에서 제시하는 실효관세율 23%는 상한선으로 이해해야 함.
- [기타 대부분의 국가]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 10%를 초과하는 실효관세율 상승이 예상됨.
 - [EU] EU의 경우 상호관세율 20%와 제232조 관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서 배제된 △의약품 품목 등으로 인해 실효관세율 상승 폭이 낮을 수 있지만, 향후 의약품에 추가적인 제232조 관세 조치가 적용된다면 실효관세율은 더욱 크게 올라갈 수 있음.
 - [동남아] 한국의 주력 패키징 거점 중 하나인 베트남(45%)을 비롯해 태국(34%), 인도네시아(35%), 캄보디아(53%)와 같은 상당수 동남아 국가는 실효관세율이 30%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자원수출국] 자원수출국인 이라크와 가이아나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높게 적용받더라도 에너지 품목의 상당수가 부속서 2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만큼 실효관세율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표 5.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 대상 상호·실효 관세율 및 관세 대상 수입액

(단위: 2024년 기준, 억 달러, %)

국가	상호관세율 (백약관)	불법 펜타닐 및 이민·상호·제232조 관세 부과 전후 실효관세율			상호관세 대상 품목 수입액	기존 제232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대상 수입액
		전 (‘24년)	차등관세 부과(원안)	10% 일률 부과		
중국	125%	11%	129%		3,139	1,150
EU	20%	1%	16%	11%	3,175	2,337
멕시코		0%	19%			
베트남	46%	4%	45%	17%	1,080	283
대만	32%	1%	27%	15%	640	507

일본	24%	2%	25%	18%	718	725
한국	25%	0%	23%	17%	566	677
캐나다		0%	16%			
인도	26%	2%	23%	12%	607	207
태국	36%	2%	34%	16%	446	178
스위스	31%	1%	19%	7%	368	203
말레이시아	24%	1%	20%	10%	366	153
인도네시아	32%	5%	35%	16%	243	28
캄보디아	49%	7%	53%	18%	113	13
남아공	30%	0%	19%	10%	65	30
이스라엘	17%	0%	12%	8%	140	76
방글라데시	37%	15%	52%	25%	83	0
이라크	39%	0%	0%	0%	0	0
필리핀	17%	1%	19%	14%	104	37
가이아나	38%	0%	1%	0%	1	0

주: 1) 멕시코와 캐나다는 별도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공란으로 둠. 중국은 추가된 상호관세율 84%를 적용함.

2) 제232조 관세는 서로 중복되는 품목들이 존재해 앞선 [표 1]의 각종 제232조 관세 대상 품목 수입액을 합한 것과 본 표의 '기존 제232조 대상 수입액'이 서로 불일치할 수 있음.

3)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US Census 자료 기준 해당 품목 수입액에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곱한 값을 기존 관세 수입에 더해 새로운 관세 수입액을 도출함. 자동차와 부품, 철강 파생상품, 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모두 일괄적으로 기존 관세 수입에 추가적인 25%의 관세율을 적용함. 철강과 알루미늄 본 제품은 모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MFN 세율을 고려하면 실효관세율은 이보다 높을 수 있음. 또한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기존 관세액에 상호관세율까지 고려한 관세액을 상정함. Annex 2의 경우 기존 관세액만 고려함.

자료: US Census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상호관세 영향에 대한 각계의 반응

1) 업계 반응

■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산업별 협단체들은 지지와 우려가 혼재된 반응을 보였으며, 동일 산업 내에서도 노동자와 기업 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

- 전미철강노조(USW)가 주요 제조업체들과 함께 설립한 미국제조연합(AAM)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지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친기업 중심의 전미제조업협회(NAM)는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미국제조연합의 스콧 폴 회장은 “오늘의 무역 조치는 국내 제조업체와 미국 근로자를 우선시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단계”라고 언급함.⁴⁾

○ 전미제조업협회 제이 티몬스 회장은 “새로운 관세의 높은 비용이 투자, 일자리, 공급망을 위협하고 결과적

4) “AISI Statement on President Trump’s Tariff Announcement”(April 2, 2025), AISI.

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우월하고 탁월한 제조 강국으로서 미국의 능력을 위협한다”라고 언급함.⁵⁾

- 미국 내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에서도 산업별로 엇갈린 반응이 나옴.⁶⁾
 - 미국 내 트럭 운전자 노동조합인 팀스터즈(Teamsters)는 성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릴 수 있는 관세 부과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힘.
 -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수입 자동차 대상 25% 관세 부과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이번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 연맹인 AFL-CIO⁷⁾는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을 지지해 왔으나,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 중 특히 대캐나다 관세에 대해 반대하며 팀 케인 상원의원이 주도한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을 지지함.⁸⁾

■ 그 외 긍정적 반응을 보인 단체로는 미국철강협회(AISI), 반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CPA) 등이 있으며, 신발 유통업 및 소매업 협회(FDRA), 전국레스토랑협회(NRA), 미국소매업협회(NRF) 등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함.

- AISI 케빈 텀프시 회장은 성명서에 “미국 철강 생산업체들은 불공정한 외국 무역 관행이 국내 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나서준 것’에 감사를 포함.⁹⁾
- 관세 지지 단체인 CPA의 잭 모틀 회장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제조업을 우선시하고, 노동자 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하며, 중국과 같은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¹⁰⁾
- FDRA의 매트 프리스트 회장은 “미국 가정에 재앙적”이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이 더 표적화된 접근법을 취하기를 바랐으나 이러한 광범위한 관세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제품 품질을 저하시키며 소비자 신뢰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힘.¹¹⁾
- NRA 미셸 코르스모 회장은 대다수 레스토랑 운영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국내산 재료를 선택하려고 하지만, 미국 농부와 목장주들이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양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식품 및 포장 비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상승을 우려함.¹²⁾
- NRF는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불안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러한 관세를 외국이나 공급업체가 아닌 미국 수입업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백만 미국 기업들의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함.¹³⁾

5) “Timmons: Tariffs Will Add Costs for Manufacturers”(April 2, 2025), NAM.

6) “Trump Put Labor Unions on a Pedestal. Not All Are Sold on His Tariff Plan”(April 5, 2025), WSJ.

7) AFL-CIO(America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는 다양한 산업(교사, 철강 노동자, 항공 승무원, 건설 노동자 등)의 노동조합 연맹임.

8) “Letter Supporting Legislation That Eliminates the National Emergency Used to Justify Tariffs on Canada”(Mar 27, 2025), Legislative Alert. AFL-CIO.

9) “White House Pushes Back Against Decades-Long Trade Imbalances”(April 2, 2025), AAM.

10) “CPA Applauds President Trump’s “Liberation Day” Tariff Announcement as Essential Reset of Global Trade System”(April 2, 2025), CPA.

11) “FDRA Warns: New Tariffs Will Hit American Families Hard, Forcing Them to Buy Less and Pay More”(April 2, 2025), FDRA.

12)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tatement on Trump Reciprocal Tariff Announcement”(April 2, 2025), NRA.

13) “More Tariffs Lead to Higher Costs for American Families”(April 2, 2025), NRF.

2) 학계 반응

-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며,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담 포센(Adam Posen) 소장은 이 관세가 “행정부가 주장하는 미국 제조업 고용 증가의 일부분도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오히려 “미국 기업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점유율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측함.¹⁴⁾
- 미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무역 분석가 스콧 린시컴(Scott Lincicome)은 ‘트럼프의 관세 정당화가 빈약하고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¹⁵⁾
 -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 관세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Hawley Tariff Act)」 이후 보지 못한 수준에 접근할 것이며,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대공황을 심화시켰음을 강조함.
-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 연준의장은 트럼프의 관세가 ‘예상보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평가하면서, “적어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temporary rise in inflation)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영향이 더 지속적(more persistent)일 수 있다”고 강조함.¹⁶⁾
 - 파월 의장은 정책 변경을 고려하기 전에 “더 명확한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금리 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임.
- 파이프 샌들러(Piper Sandler)의 글로벌 수석 경제학자 낸시 라자르(Nancy Lazar)는 2/4분기 성장률이 이전에 예상했던 성장 정체에서 1%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수정했으며, 관세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이 “가격을 더 공격적으로 인상하게 되고 소비자 부문에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언급함.¹⁷⁾
- 노무라 증권은 새로운 수입 관세를 고려할 때 2025년 GDP 성장률을 0.6%로 예상하며, 근원인플레이션이 4.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¹⁸⁾
- 투자은행 바클리(Barclays)는 2025년 GDP 성장률이 -0.1%를 기록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며 인플레이션도 3.7% 상승한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함.
-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AEI)는 USTR이 0.25로 설정했던 수입 가격의 관세탄력성이 사실은 1에 가깝다(실제 0.945)는 점을 지적하면서, USTR이 소매 가격과 수입 가격의 차이를 혼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함.¹⁹⁾

14) Anjali V. Bhatt(April 3, 2025), “PIIE experts react to Trump’s tariffs announced April 2,” Realtime Economics, PIIE.

15) “Trump just massively escalated his trade war. Here’s what he announced”(April 2, 2025), CNN.

16) “Fed Chair Powell says he expects Trump’s tariffs will hike inflation and slow growth”(April 5, 2025), abc News.

17) “Americans’ Reactions to Trump’s Tariffs Range From Worried to Enthusiastic”(April 2, 2025), The New York Times.

18) “Economists Slash US Growth, Boost Inflation Forecasts on Tariffs”(April 4, 2025), Bloomberg.

19) Corinth, Veuger(2025. 4. 4.), “President Trump’s Tariff Formula Makes No Economic Sense. It’s Also Based on an Erro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https://www.aei.org/economics/president-trumps-tariff-formula-makes-no-economic-sense-its-also-based-on-an-error/>(검색일: 2025. 4. 8.).

■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계산 방식이 글로벌 무역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무역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함.²⁰⁾

- 펠릭스 틴텔롯(Felix Tintelnot) 교수(듀크대학교)는 “통합된 글로벌 경제에서 양자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이라며 “베트남과의 무역적자가 내년에 줄어든다면 관세율도 변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 브라이언 베큐(Brian Bethune) 교수(보스턴칼리지)는 “경제적 지위 및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다른 국가들에 동일한 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 저명한 경제학자 제임스 수로위예키(James Surowiecki)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계산법이 단순히 “각 국가와의 무역적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로 나눈 것”이라며 “엄청난 난센스”라고 비판함.

3) 의회 반응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무역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관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²¹⁾

-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의원은 “비즈니스에서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단기적 고통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지함.
- 신시아 루미스(와이오밍) 의원은 트럼프가 관세 시행에 있어 ‘상당히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함.
 - 루미스 의원은 이미 여러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 관세를 ‘협상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드러내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존 케네디(루이지애나) 의원은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조정할 것”이라고 예상함.

■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를 종료하는 결의안을 51대 48로 통과시켰는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는 4명의 공화당 의원이 포함됨.²²⁾

-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관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초당적 우려가 존재함을 시사함.
 -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전, 미치 맥코넬(켄터키), 수잔 콜린스(메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을 지목하며 결의안에 반대하도록 압박함.
- 결의안 지지자들은 ‘캐나다가 멕시코나 중국과 달리 펜타닐의 주요 공급원이 아니므로 관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상원의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줌.

20) “Why Economists Are Horrified by Trump’s Tariff Math”(April 4, 2025), TIME.

21) “Some Republican senators concede tariffs could cause ‘short-term pain’”(April 2, 2025), NBC.

22) S.J.Res.37 - A joint resolution terminating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to impose duties on articles imported from Canada.

- 상원 재무위원회 전 위원장인 척 그래스리(공화당-아이오와) 상원의원은 마리아 캔트웰(민주당-워싱턴) 상원의원과 함께 ‘2025 무역검토법안(Trade Review Act of 2025)’을 공동 발의함.²³⁾
 - 그래스리 의원은 이 법안이 ‘의회 헌법상 역할을 재확인하고 무역 정책에 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2025 무역검토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함.
 - 대통령은 관세 부과 또는 인상 48시간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함.
 - 의회 통보 시 관세 부과 이유와 미국 기업 및 소비자에 미칠 잠재적 영향 분석을 포함해야 함.
 - 의회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관세에 대한 공동 승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함.
 - 60일 이후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관세는 만료
 - 의회는 언제든지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켜 관세를 종료시킬 수 있음.
-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성명,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관세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함.²⁴⁾
 - 하원 세입위원회 수잔 덴벨 위원(워싱턴)은 성명서에 “이번 관세 발표가 ‘미국 가정과 기업에 막대한 세금 인상을 부과’했다고 지적하며 ‘동맹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한 무역 전쟁은 높은 물가, 일자리 감소, 증시 하락, 미국 제품 판매 시장 축소로 인해 참담’할 것”이라고 경고함.
 - 상원 재정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간사인 론 와이든 의원(오리건)은 상호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억만장자 친구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구매하는 거의 모든 것에 세금”이라고 성명을 통해 비판함.
 - 하원 농업위원회(House Agriculture Committee) 간사인 앤지 크레이그 의원(미네소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 무역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행정부는 미국 농부, 노동자, 소비자들을 해치고 있다”라고 비판함.

3. 시사점

가. 의제별 상호관세율 변화 가능성

- 상호관세 조치상 이슈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의제가 상호관세율 인하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의 협상 의제 점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전부터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춰줄 수 있음을

23) Hannah Monicken(April 3, 2025), “Sens. Cantwell, Grassley introduce bill to limit presidential trade powers,” World Trade Online. Inside U.S. Trade.

24) David LaRoss(April 2, 2025), “Democrats blast ‘stupid’ reciprocal tariffs as industry seeks quick resolution,” World Trade Online. Inside U.S. Trade.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한국이 미국 측에 요구하고 제시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같은 의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행정명령 제4조(c)항은 “교역상대국이 비상호적인 무역협정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 미국과 충분히 협조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관세 부과 범위를 좁히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따라서 비관세조치 완화 등과 함께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의제(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산업 협력 등)를 두고 관세 협상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상호관세 조치상 이슈 제기] 동시에 상호관세 조치상 이슈를 들어, 특히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역차별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제기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미국 측에 다양한 이슈를 제시해볼 수 있으나 개별 의제만으로는 관세 감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바, 현실적으로는 여러 시나리오가 병합된 형태를 통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6. 의제별 상호관세율 변화 가능성 요약

의제	내용	상호관세율 변화 (현행: 25%)
기준연도 설정 이슈	·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확대되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국에 불리하며, 단년도 수출입 실적은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 역시 존재	· [2020~24년 기준] 20% · [2022~24년 기준] 22%
품목 범위 조정	· 상호관세 조치에서 제외된 품목은 대부분 제232조 관세 부과 대상이거나 미국에 중요한 수입품이므로 상호관세 계산 과정에서 제외할 필요	· 상호관세 대상 품목만 고려할 경우 상호관세율은 20%로 하락
대미 투자와 연계된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	· '22~24년간 이루어진 대미 투자 증가에 동반된 중간재 수입을 배제할 필요 언급	· 건설직접투입 재화를 고려하면 상호관세율은 20~24%로 인하 가능
미국산 LNG 수입 확대	· 미국산 LNG 500만 톤가량 추가 수입	· 상호관세율은 24%로 낮아질 가능성
미국 내 현지 생산 통한 수출 전환	·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로 인한,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통해 대체되는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을 차감	· 배터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현지 생산 전환 고려 시 대략 22~23%로 상호관세율 인하

주: 본 표에서는 편의상 USTR의 산식을 통해 계산된 무역수지 비율에서 50% 할인한 수치를 상호관세율로 칭함.
자료: 후술할 내용 요약.

■ **[기준연도 설정 이슈]** USTR이 상호관세 계산을 위해 사용한 기준 시점인 2024년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동시에 이에 동반된 중간재 수출도 함께 늘어난바, 시점상 한국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금액*은 2022~23년 미국 내 전체 그린필드 투자 금액의 30% 이상을 점유했으며, 이는 BEA에서 집계하는 유럽 내 58개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임.

* 그린필드 투자금액: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닌 신규 법인 설립 혹은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해외투자금액보다는 미국 내 제조여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하면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거나 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게 되며, 이는 미국 내 중간재 수입 증가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

- 2024년을 기준으로 삼고 'USTR 상호관세'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린필드 투자금액이 2024년 이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국가에 불리한 방식이며, 한국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방식은 오히려 미국 내 투자한 국가들에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어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 내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에 상충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무역수지 자체가 △환율, △경기, △공급망 여건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변수라는 점에서 단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관세율 설정 시 시장에 대한 교란이 심화할 수 있음.

표 7. 기준 연도 설정에 따른 'USTR 상호관세' 변화

연도	미국 기준 대한민국 교역 (억 달러)			USTR 상호관세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유입액 (억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전체	한국		유럽	
						투자 금액	비중 (%)	투자 금액	비중 (%)
2020	509.8	760.1	-250.3	16.5%	54.5			26.6	48.7%
2021	658.1	951.0	-293.0	15.4%	77.4			54.5	70.4%
2022	720.9	1,153.2	-432.3	18.7%	131.2	49.6	37.8%	37.3	28.4%
2023	650.6	1,161.5	-511.0	22.0%	123.9	40.9	33.0%	21.0	17.0%
2024	655.4	1,315.5	-660.1	25%					
'20~24 평균	638.9	1,068.3	-429.3	20.1%					
'22~24 평균	675.6	1,210.1	-534.4	22.1%					

주: 1)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유입액'이란 신규 해외투자(new foreign direct investment) 중 신규 법인을 설립(new business es established)하거나 기존 법인을 확장(businesses expanded)하는 것을 의미함. 만약 두 변수를 더한 값을 우선 적용하 되 해당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체 신규 해외투자에서 미국 법인을 인수(businesses acquired)한 것을 차감한 값을 사용 함(양측의 차이는 반올림 관계로 백만 달러 단위에서 오차가 한정적으로 발생하며, 억 달러 단위로 표기하는 본 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2)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유입액'의 경우 본고 검색일 기준 2024년도 값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외 공란은 기업의 사업 기밀상의 이유 등으로 공개되지 않아 계산이 불가능함.

자료: 미국 기준 대한민국 교역은 US Census의 자료를 활용함.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유입액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ata on new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검색일: 2025. 4. 4.)을 사용함.

■ **[품목 범위 조정]** 이번 상호관세조치는 상당수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반면, 'USTR 상호관세' 계산은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어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만약 상호관세 대상 품목만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관세율과 실효관세율 모두 2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음.
- [상대적 차이]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입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국가(예: 일본)도 해당 기준 적용 시 관세율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득실을 따져봐야 할 필요는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에 상호관세에서 배제된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에서 상당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만 고려'하는 계산법이 유리할 수 있음.

표 8. 품목 범위 조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변화

국가	미국의 수입액 (억 달러, '24년 기준)	상호관세율 (백악관 기준)	시나리오: 상호관세 대상 품목만 고려		
			수입액 (억 달러, '24년 기준)	무역수지 (억 달러, '24년 기준)	상호 관세율
EU	6,058	20%	3,175	-1,131	18%
베트남	1,366	46%	1,080	-996	46%
대만	1,163	32%	640	-394	31%
일본	1,482	24%	718	-216	15%
한국	1,315	25%	566	-221	20%
인도	874	26%	607	-376	31%
태국	633	36%	446	-346	39%
스위스	634	31%	368	-257	35%
말레이시아	525	24%	366	-230	31%
인도네시아	281	32%	243	-166	34%
캄보디아	127	49%	113	-111	49%
남아공	147	30%	65	-29	23%
이스라엘	222	17%	140	-25	10%
방글라데시	84	37%	83	-64	38%
이라크	74	39%	0	10	10%
필리핀	142	17%	104	-32	16%
가이아나	54	38%	1	9	10%

주: 1) 캐나다와 멕시코는 본 표의 국가들과 다른 방법으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루지 않음.
 2) 중국은 보복 조치로 본 표의 국가들과 상호관세율이 다른 방법으로 조정된 관계로 다루지 않음.
 자료: US Census 교역 통계 활용.

■ [대미 투자와 연계된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와 동반되어 대미 건설사업 역시 활성화된 만큼, 해당 건설업 투입재를 상호관세율 계산 과정에서 제외해 볼 수 있음.

- [대미 건설 증가] 한국의 대미 건설 수주액은 미국 내 한국의 그린필드 투자액이 부각된(표 7 참고) 2022년부터 평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성장함.

그림 3. 한국의 대미 해외건설 수주 추이



자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https://ocis.go.kr/>(검색일: 2025. 4. 5.).

- [대미 건설업 투입재 제외] 만약 건설업에 대한 주요 투입재 증가액을 'USTR 상호관세' 계산 과정에서 고려한다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

표 9. 해외 투자·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 수입액 증가를 보정할 때의 상호관세

주요 건설업 투입재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액(억 달러)					2024년과 비교(억 달러)	
산업	투입비중(%)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0년 대비	'22년 대비
금속가공품	21.1%	23	26	35	35	43	20	8
비금속광물	17.2%	4	5	5	5	5	1	0
목재	12.3%	0	0	0	0	0	0	0
전자 장비	8.8%	64	89	104	117	109	46	5
석유 및 석탄	8.3%	27	42	60	56	55	28	-5
기계	8.2%	69	84	103	120	142	73	38
플라스틱 및 고무	7.7%	30	31	38	32	32	3	-6
가구	4.1%	1	2	2	2	3	1	1
광업(오일 가스 제외)	3.8%	0	0	0	0	0	0	0
화학제품	3.4%	59	80	113	116	128	69	15
합계	95.0%	277	359	460	483	517	240	57
건설 투입재 수입액 증가를 보정한 상호관세							20%	24%

주: 1) 미국의 71부문 사용표 기준 건설업(Construction)에 대한 중간재 투입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10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였으며, 투입비중은 'USTR 상호관세'가 주목하지 않은 서비스 부문은 제외하고 계산한 것임. 동 10개 품목만 고려하더라도 전체 중간재 품목(서비스 제외) 투입 비중이 95%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2) '건설 투입재 수입액 증가를 보정한 상호관세'는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수입액 증감에 따라 'USTR 상호관세'를 다시 계산한 것임. 미국의 대한민국 수출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뒤 미국의 대한민국 무역수지와 수입액을 본 표에 나타난 10개 품목 합계 금액에 따라 다시 계산해 상호관세를 도출함.
자료: '주요 건설투입재'는 미국의 2023년도 기준 사용표(71부문)를 사용함. 그 외 자료는 모두 US Census 교역 통계를 활용함.

- [현지 생산을 통한 수출 감축] 한국 내 생산량이 우리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현지생산으로 전환될 경우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으며, 이를 상호관세율 계산에 반영할 수 있음.
- [배터리]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용량이 202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한국의 대미 배터리 수출액 감소를 예상할 수 있음.

그림 4.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용량과 미국의 대한민국 배터리 수입액 추이



주: SK온과 포드의 쉐넬리 합작투자는 투자 계획 연기로 인해 본 그림에 반영하지 않음.
자료: 정원석(2024. 5.), 「이차전지/Underweight: 불편한 진실」; iM증권 In-depth, [https://m.imfnsec.com:442/upload/R_E09/2024/05/\[27223317\]_241072.pdf](https://m.imfnsec.com:442/upload/R_E09/2024/05/[27223317]_241072.pdf)(검색일: 2025. 4. 7.)를 재구성함.

- [자동차]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조지아 및 앨라배마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여력이 확대될 예정임.
 - 현대차그룹은 9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연간 120만 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임.²⁵⁾
 - 이 외에도 6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자동차 공급망 내재화를 추구하고, 미국 기업과의 미래 기술(자율주행, 로보틱스, AI, 공중모빌리티) 협력을 위해 6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중간재 수출] 한국 배터리 셀 및 자동차 제조사와 연관된 중간재 공급 기업도 미국에 동반 진출하는 상황인 바, 미국 내에서 배터리 및 자동차 생산 역량이 확대되어도 한국의 대미 배터리 및 자동차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 [배터리 중간재] LG화학, 롯데알루미늄, 한화첨단소재, 솔브레인, LNF 등이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제조 역량을 갖춰가는 중임.
 - [자동차 중간재] 현대차그룹 내에서도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이 미국 내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한국타이어, 세원정공, 아진산업, NVH코리아, 한온시스템 등이 미국 내 투자 중임.

표 10. 배터리 및 자동차 현지 생산 전환에 따른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 감소액과 상호관세를 변화

품목		2024년 실적	현지생산 전환에 따른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 감소액(억 달러)		
			전환율: 10%	50%	100%
배터리		29.3	2.9	14.6	29.3
USTR 상호관세		25.1%	25.0%	24.8%	24.5%
자동차	전기차	45.1	4.5	22.5	45.1
	USTR 상호관세	25.1%	25.0%	24.7%	24.2%
	하이브리드 자동차	73.5	7.3	36.7	73.5
	USTR 상호관세	25.1%	24.9%	24.4%	23.6%
자동차 전체		366.4	36.6	183.2	366.4
USTR 상호관세		25.1%	24.4%	21.1%	15.5%
배터리 및 전기차 100% 현지 생산 전환			하이브리드 자동차 현지생산 전환율		
			10%	50%	100%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 감소액(억 달러)			81.7	111.1	147.8
USTR 상호관세			23.4%	22.8%	21.9%

주: 1) 본 표는 다음과 같은 품목 분류를 사용함. 배터리: NAICS 335910, 전기차: HS870240, 870380, 하이브리드: 870220, 870230, 870340, 870350, 870360, 870370, 자동차 전체: NAICS 336110.

2) 현지 생산 전환율이 X퍼센트라면 현지 생산 전환에 따른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 감소액은 2024년 실적치에 X/100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한민국 무역수지와 수입액을 함께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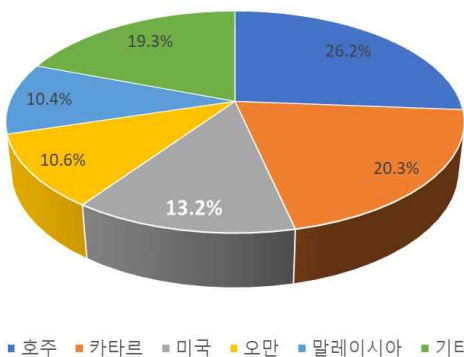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교역 통계 활용함.

25) Hyundai Motor Group(2025. 3. 25.), "Hyundai Motor Group Commits to U.S. Growth with USD 21 Billion Investment," <https://www.hyundai.com/worldwide/en/newsroom/detail/hyundai-motor-group-commits-to-us-growth-with-usd-21-billion-investment-0000000918>(검색일: 2025. 4. 7.).

■ [미국산 LNG 수입 확대] 한국 LNG 수입 장기 계약 물량의 미국산 대체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비율을 낮춤으로써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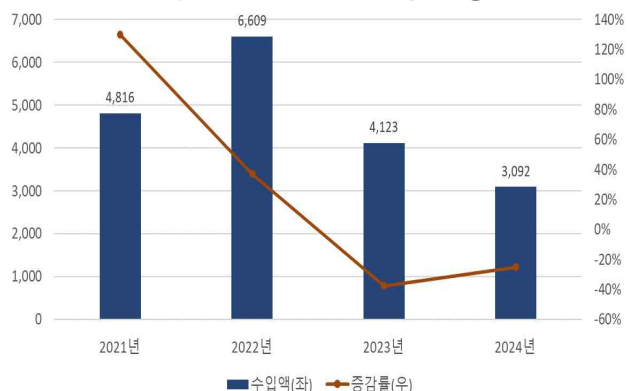
- 2021~24년 기간 한국의 주요국별 한국의 LNG 수입액과 비중을 살펴보면 호주(369.04억 달러, 26.2%), 카타르(285.46억 달러, 20.3%), 미국(186.41억 달러, 13.2%) 순임.
- 그중 카타르와의 492만 톤 규모 LNG 수입 장기 계약이 2024년 말에 종료되었으며, 2026년 말에는 210만 톤 수입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바, 연간 최대 700만 톤 규모의 LNG 수입처로서 미국이 급부상 중임.²⁶⁾
 - 한국가스공사(KOGAS)는 2021년에 카타르와 기존 계약 대비 도입 단가를 34% 낮춘 조건으로 향후 20년간(2025~44년) 200만 톤 규모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²⁷⁾
- 최근 4년(2021~24년)간 한국의 대미 LNG 수입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66.0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23년과 2024년 한국의 대미 LNG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각각 -37.6%, -25.0%였으며, 무역수지 적자 규모로는 각각 41.23억 달러, 30.84억 달러를 기록함.

그림 5. 한국의 주요국별 LNG 수입 비중



주: 2021~24년 수입액 합산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검색일: 2025. 4. 4.).

그림 6. 한국의 대미 LNG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검색일: 2025. 4. 4.).

- 상기한 대미 추가 LNG 수입 물량 규모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시나리오 1] 2024년까지였던 카타르와의 LNG 장기 수입 계약(492만 톤) 종료에 대비해 2021년 신규로 카타르와 체결한 20년(2025~44년) 수입 계약 물량 200만 톤을 제외한 292만 톤을 미국산 LNG로 대체할 경우, '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8.99%로 하락하여 이에 연동된 상호관세율은 24.4%로 낮아질 수 있음.
 - [시나리오 2] 2024년 말에 종료된 카타르 LNG 수입 물량 492만 톤 전체를 미국산 LNG로 대체할 경우, '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8%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상호관세율도 현행 25%에서 24%로 1%p 인하 될 수 있음.
 - [시나리오 3] 시나리오 2에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카타르산 LNG 수입 물량 210만 톤을 더해 총 702

26) Business Korea(2025. 1. 31.), "South Korea to Import 7 Million Tons of U.S. LNG Annually in Strategic Energy Shift,"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532>(검색일: 2025. 4. 4.).
 27) The GURU(2024. 11. 6.), 「갈자루 쥘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긴급 방향' 카타르와 LNG 계약 담판 협상」,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79360>(검색일: 2025. 4. 6.).

만 톤을 미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7.1%로 감소하며, 상호관세율은 23.6%까지 떨어질 수 있음.

표 11. 대미 LNG 추가 수입 시나리오별 상호관세율 변화

구분	대미 LNG 추가 수입 물량(만 톤)	대미 LNG 수입단가 (2024년 기준, 달러/톤)	대미 LNG 추가 수입액 (억 달러)	현행 무역수지 비율 (상호관세율)	변경된 무역수지 비율	보정 상호 관세율
시나리오 1	292	548.57	16.0	-50.0%(25%)	-48.88%	24.4%
시나리오 2	492		27.0		-47.99%	24.0%
시나리오 3	702		38.4		-47.12%	23.6%

자료: 저자 계산.

나. 정책 시사점

■ **[미국과의 협상 준비]** 이번 상호관세 부과 후 한국은 미국과 협상 의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협상 필요성] 예상보다 파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 향후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한국은 주변 상황에 맞춰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임.
 - 이번 조치가 철회되더라도 비슷한 통상 압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접근 방식을 참고해 협상 의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의제 준비] 본고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국한된 의제를 점검하되, 이 외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둔 행정명령 제4조(상호관세 수정 관련 규정)를 근거로 미국 경제안보와 관련된 사항도 두루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본고에서는 △기준연도 설정, △품목 범위, △해외투자과 연계한 대한국 수입 증가, △한국의 대미 수입 확대, △미국 내 생산을 통한 수출 전환을 다루었으나, 개별 의제만 놓고 접근했을 때는 실효관세 인하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고려 사항을 최대한 패키지로 해서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우리 업계와 정부가 고려했던 미국과의 경제안보 관련 산업 및 기술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지적한 교역 및 비교역 장벽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대미 요구사항과 비교해 상대적 득실을 따져봐야 함.
 -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훌륭한 통화(great call)”로 평가하며 한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패키지 협상(one stop shopping)이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²⁸⁾

28) Donald J. Trump(2025. 4. 8.), 트루스소셜 게시물, <https://x.com/TrumpDailyPosts/status/1909597349917184378>(검색일: 2025. 4. 10.).

- [규정의 모호함] 또한 이번 조치는 미국 측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세부 사항이 발견되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향후 보완될 가능성이 있음.
 - [멕시코] 상호관세 행정명령은 기존 캐나다에 대한 기존 조치들 중 하나로 USMCA 적용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는 EO 14231을 언급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멕시코 조치인 EO 14232는 언급하지 않음.
 - * 올바르게 표기한다면 캐나다에 대해서는 EO 14193, 14197, 14226(누락), 14231, 멕시코에 대해서는 EO 14194, 14198, 14227, 14232(누락)를 언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행정명령 인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임.
 - * 다만 앞뒤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동일하게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면 무세 조치가 지속됨을 유추할 수 있음.
 - [Annex II] 상호관세 행정명령 제3조(b)항 서두에서는 Annex II에 명시된 품목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Annex II에는 기존 제232조 관세 조치로 상호관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품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다만 문맥상 Annex II 외의 제232조 관세 대상 품목 전체가 상호관세 영향권 밖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파생상품 처리] 기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에 함유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만 면세인지, △철강과 알루미늄이 함유된 파생상품 전체가 면세인지 불분명함.²⁹⁾
 - * 만약 전자라면 파생상품에 함유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만 상호관세를 면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해석을 향후 도입할 반도체 등에 대한 제232조 관세에 적용할 수 있음.
 - [상호관세율 적용 혼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차트에는 한국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백악관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에서 발표한 부속서 1의 한국 관세율은 26%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시 관세율이 25%로 바뀌는 등의 혼란이 있었음.
 - * 이는 백악관 내부적으로도 동 조치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시행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산업 지원 정책]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 만큼 이에 대한 기업들의 공급망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 실현이 필요한 시점임.

- [공급망 안정화] 한국은 공급망 3법을 통과시키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소부장특별회계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 밖의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벌어질 수 있는 공급망 교란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55조원 + α'의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동 계획의 중요한 축 중 하나가 국내생산기반 및 해외공급망 구축에 있는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공급망 재조정 작업을 해당 정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관세에 대응한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긴급 유동성 3조 원 신규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출바우처 추가,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감면 등을 추진함.³⁰⁾

29) Tabor, O'Casey, Burbanks-Ivey, Jin, Oleynik, Epstein, Rueda(2025, 4, 3.), "President Trump Announces 10 Percent Global Tariff, 11 Percent to 50 Percent Reciprocal Tariffs," Holland & Knight, <https://www.hklaw.com/en/insights/publications/2025/04/president-trump-announces-10-percent-global-tariff-11-percent>(검색일: 2025. 4. 7.).

30)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 4. 9.), 「미(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발표」.

- [산업 정책] 국내 산업 정책 보완뿐만 아니라 유사입장국과 연대한 공동 산업 정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
 - 이번 상호관세 조치 및 향후 도입될 일련의 ‘미국우선주의 통상정책’ 추진은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시험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생존한 기업을 위주로 글로벌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외생적 충격에 내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국내 산업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와 보완성을 갖춘 해외 국가를 위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 산업 정책을 구상할 때라고 할 수 있음.

■ **[제232조 관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에 더해 향후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한 추가 관세가 예고된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

- [파생상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잠재적으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본 제품보다 미국의 파생상품 수입액이 클 수 있어 향후 철강 및 알루미늄 함유량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이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 [반도체]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 2에 따르면 반도체의 경우 반제품 성격의 HS8541과 8542하의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보이지만, 향후 철강 및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까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반도체 공급망 하류 기업도 HS8541이나 H8542 등의 반도체 함유량을 증빙할 준비를 갖춰야 할 수 있음.
 - 좁은 의미의 반도체는 HS8541(디스크리트 반도체)과 8542(전자집적회로)를 포괄하지만 이 외에도 ‘산업의 쌀’ 역할을 하며 컴퓨터 부품, 낸드플래시(SSD 등)를 비롯해 가전, 스마트폰 등이 모두 관련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2024년 NAICS 3344(반도체 및 전자부품) 대세계 수입액은 1,385억(한국은 112억 달러) 달러인데, HS8541과 HS8542는 이 중 45.3%(한국은 29%)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일단 부속서 2를 바탕으로 반도체에 대한 제232조 관세 부과를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품목 범위를 확대하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함량 과세를 시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미국산 함량 관리]** 향후 기업들은 관세 부과 범위를 좁히기 위해 미국산 부품이나 원자재 수입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임.

- 미국산 함량이 20%를 넘는 품목에 대해서는 HTS 9903.01.34를 신설해 관리할 계획이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³¹⁾
- 현재로서는 수입신고서(Form 7501)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되어 있지만, 향후 통관절차에서 미국산 함량이 20%가 넘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세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31)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5. 4. 5.), "CSMS # 64649265 - GUIDANCE - Reciprocal Tariffs, April 5, 2025 Effective Date," [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3da7831?wgt_ref=USDHSCBP_WIDGET_2\(검색일: 2025. 4. 7.\)](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3da7831?wgt_ref=USDHSCBP_WIDGET_2(검색일: 2025. 4. 7.)).

- [국내외 생산물량 조정 또는 해외생산기지 재배치] 기업들은 상호관세의 상대적인 크기와 대미 무역 구조에 따라 국내외 생산물량 조정 또는 해외생산기지 재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음.
- [국내외 생산물량 조정] 한국의 주요 패키징 거점인 베트남(46%)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음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발생하는 국가 내 생산 물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USTR 계산법에 따르면 같은 단위로 미국 측 수출 및 수입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수출 증가가 상호관세를 감축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³²⁾ 같은 상호관세율이 부과된 국가더라도 미국의 수출액이 더 큰 국가에서 생산을 늘려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해외생산기지 재배치(USMCA)]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은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음.
 - 멕시코와 캐나다는 완성차에 대해 미국산 함량은 제외하고 관세를 부과받으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제232조 관세 조치를 발표한 포고령에서 미국산 함량 계산법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 이번 관세 조치에서도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를 통해 상당 부분 면세 혜택을 이어받고 있음.
 -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까지 도입했으나 아직 미국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 조치가 없는 상황이며, 미 의회 상원도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 철폐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국내외 생산물량 조정이나 해외 생산기지 재배치는 현재 최적화되어 있는 공급망 구조와 비교할 때 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KIEP**

32) USTR의 가정대로 수입 수요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이 서로 곱할 때 상쇄되어 1이라면 상호관세율은 $\Delta\tau_i = \frac{x_i - m_i}{m_i}$ 로 단순화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값을 수출액 x_i 로 미분하면 $\frac{\partial\tau_i}{\partial x_i} = \frac{1}{m_i}$ 이 되며 수입액 m_i 로 미분하면 $\frac{\partial\tau_i}{\partial m_i} = -\frac{x_i}{m_i^2} = -\frac{1}{m_i} \left(\frac{x_i}{m_i} \right)$ 가 됨. 그런데 해당 상호관세는 미국 기준 무역수지 흑자국에는 10%로 일괄 적용되어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0%를 초과하는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에는 일반적으로 $x_i < m_i$ 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절댓값을 비교하면 $\left| \frac{\partial\tau_i}{\partial x_i} \right| > \left| \frac{\partial\tau_i}{\partial m_i} \right|$ 라고 할 수 있음.